

문서번호	경영지원부-486		담당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부장	경영전략본부장	사장
보고일자	(2023.01.12.)		김은영	윤영선	강성필	이재옥	원명희 01/12
결재일자	(2023.01.1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연락처	성명	김은영					
	☎	032-340-0732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적용한 -
『인권경영』 최종 보고서

직위	의견 및 지시사항	조치사항 (담당부서)
사장		
본부장		
부장		

요 지

□ 추진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수용에 따른 충실한 이행”

-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22. 5월>
- 적용 권고 수용 및 이행계획 제출 <공사 → 인권위 및 경기도 / 2022. 10월>

□ 추진사항

- 지침 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공사 인권경영 최종 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 추진체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 후,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부 천 도 시 공 사
 경영지원부

사전 검토항목(Check List)

구분	검토 항목	검토사항	완료 여부	완료 (예정)	해당 없음	비고
제 반 사 항	제반법규 검토사항	◆ 정책수립을 위한 제반법규를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청탁금지법 <input type="checkbox"/> 공직선거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사 제규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관련법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3. 1월	<input type="checkbox"/>	인권경영 규정, 국가인권 위원회법
	재원확보 방안	◆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국·도비 <input type="checkbox"/> 시비 <input type="checkbox"/> 자체 재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보방안	◆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설명회 <input type="checkbox"/> 소식지 <input type="checkbox"/> SNS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3. 1월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정보공개 포털 공개 등
	안전대책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 업 협 치	관련부서 사전협의	◆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기관 협력	◆ 자치단체, 의회, 유관기관 등과 사전 업무공유 및 협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민 전문가 참여	◆ 시민 및 관련전문가 등 숙의과정을 거쳤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토론회 <input type="checkbox"/>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설문조사 <input type="checkbox"/> 시민공모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책 요 소	평가환류	◆ 사업 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환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input type="checkbox"/> 결과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평가보고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전절차 이행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투자심의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이사회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용역심의 <input type="checkbox"/> 일상·계약심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공갈등	◆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타	정보화 사업 절차이행	◆ 정보화사업 자체검토 및 유관기관 심사/승인 절차를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체검토(정보지원팀) <input type="checkbox"/> 통합심사(부천시) <input type="checkbox"/> 사전협의(경기도)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공개	◆ 공개여부의 “비공개”설정과 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3. 1월	<input type="checkbox"/>	공개문서
	경영공시	◆ 경영공시 사항인지와 이행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치 등 정확성	◆ 수치, 단위, 오타자, 바른 우리말 사용을 검토하였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3. 1월	<input type="checkbox"/>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적용한 -

『인권경영』 최종 보고서

2023. 1.

1

추진배경

-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22. 5. 4.>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3항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 2022. 7. 14. 적용 권고 결정문 송부: 국가인권위원회 → 공사
- **2022. 10. 11. 적용 권고 수용** 및 이행계획 제출
: 공사 →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기도 인권담당관

2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요지

지침의 성격 및 개요

【지침의 목적】

이해관계자에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보고할 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적용대상】

인권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권경영 보고란?】

기관이 실천한 인권경영 결과를 점검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 ☞ 즉,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은 인권경영 보고 시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며,**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함

※ 해당 지침은 보고와 평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보고에 대한 지침을 본 기관에 적용하며, 평가에 대한 지침은 경영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서 적용하여야 함

주요내용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보고에 담아야 하는 사항<발췌>”

<p>㉠ 인권경영 추진 체계 및 인권정책선언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목록과 주요 내용 ▶ 인권경영 책임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여부, 역할 및 구성 원칙 ▶ 국제인권기준 지지를 담은 인권정책선언 내용 ▶ 인권정책선언 제정과정 및 확산 노력
<p>㉡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실시과정 ▶ 인권영향평가 결과로서 식별된 주요 인권이슈 ▶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 주요 인권이슈의 대응계획 성과
<p>㉢ 구제절차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권침해 구제절차 설명 ▶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해당연도 구제절차 운영성과(접수건수 및 내역) ▶ 사건의 처리 절차와 결과, 미해결 사건의 향후 대책
<p>㉣ 인권경영 교육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인권경영 교육체계(규정, 전담부서, 담당자) ▶ 인권경영 교육 주제 선정과정 ▶ 관리자 및 현원대비 교육 참여율 등 교육 운영성과
<p>㉤ 종합적 평가, 공개의 원칙 및 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종합적 평가를 도출한 과정 ▶ 인권경영 보고가 외부 이해관계자에 공개된 방법 ▶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등 소통 결과

3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결정”을 존중하고,
- ▶ 공기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존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권고를 수용함

※ 2022. 10. 11. 권고 수용 및 이행계획 인권위원회 제출 완료

※ 2022년 실적 기반,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

가 인권경영 추진 체계 및 인권정책선언 관련

가-1

인권경영 관련 규정 목록 및 주요내용

□ 규정명: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규정 <2019. 10. 19. 제정>

□ 인권경영규정 목록 및 주요내용

	규정 목록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인권경영규정의 목적
	제2조(정의)	인권,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성별, 학력 등 비차별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 권리 보장
	제5조(직원인권 보호)	인격권, 휴식권 등 보호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금지
	제7조(산업안전보장)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현지주민 인권침해 유의
	제9조(환경권 보장)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준수
	제10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유의
	제11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금지
	제12조(구제조치)	인권침해 대응, 구제조치 이행
제3장 인권경영 체제	제13조(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헌장 선포 및 실천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경영 실행전략 등 계획 수립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 담당 부서 운영
	제16조(인권교육)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위원회 수행 기능
	제18조(구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제19조(소집 및 회의)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제20조(수당 등)	참석수당 등 지급
	제21조(의견청취)	회의안건 관련자 의견 청취
	제22조(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의 이해관계자 배제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지)	품위 손상 등 해촉 사항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 신고 방법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침해행위 처리방법
	제29조(신고의 취하)	신고자의 신고 취하방법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종결)	인권침해행위 종결 사유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2조(인권침해여부에 관한 상담)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과의 상담
	제33조(시정과 조치)	인권침해 사항 시정 및 조치

가-2

인권경영 책임자

- **인권경영 책임자: 기관장 <원명희 사장>**
- **인권경영 담당 이사: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본부장>**
 - 경영전략본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3

독립적 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인권경영위원회**
- **위원회 역할: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인권경영 관련 계획·정책·제도에 대한 자문, 인권침해행위 조사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사항 점검
- **구성원칙: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인권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외부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내부위원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가 소속된 본부의 장과 부서장
- **구성현황: 총 5명**

외부위원(3명)	대학교수 1명, 노무사 1명, 시민사회 활동가 1명
내부위원(2명)	경영전략본부장, 경영지원부장

가-4

인권경영 실무 담당부서

□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경영지원팀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강성필
경영지원팀장	윤영선	윤영선
인권경영 담당	김은영	김은영

가-5

종전의 인권체계와 달라진 점

□ 주요 개선사항

- 인권경영헌장 개정(인권위 보고지침 반영,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포함)
*인권위 지침에 따라 '기관명'으로 인권경영 선포
- 인권영향평가 시 주요사업 분야 확대(개발사업 → 개발사업 + 주차사업)
- 인권경영 정보의 대외 공표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 「인권경영정보」 게시판 개설 및 인권경영 성과 게시
- 지역사회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확대
: 인권존중 나만의 다짐 이벤트 및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캠페인 추진

가-6

인권정책선언 공개적 천명

□ 선언방법: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2022. 12. 13.(화) / 전 임직원 참석 / 인권경영헌장 선언 및 공표
- '임직원 일동'이 아닌, [“부천도시공사” 기관명으로 선언](#)



가-7

인권정책선언의 국제기준지지 등 포함

□ 인권경영헌장 내 국제기준지지 의지 표명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보호와 증진, 공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신뢰받는 이류 공기업을 지향한다.”

□ 인권경영헌장 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정책 포함

“우리는 정부, 경기도, 부천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인권경영헌장 내 구제절차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정책 서술

“우리는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가-8

인권정책선언 제정과정 및 공개방식

□ 인권경영헌장 제정: 2018. 11월

□ 인권경영헌장 개정

- 2020. 12월 / 공사 새로운 미션·비전 등 반영(주거환경 개선 역할 포함)
- 2022. 12월 / 인권위원회 보고 지침 반영(구제절차 포함)

□ 제정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참조, 초안 작성
→ 공사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및 자문 → 인권경영헌장 확정

□ 공개방식

- 홈페이지 “인권경영헌장 게시판” 및 사내 인트라넷 게시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연계,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등록

□ 인권정책선언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후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2022. 12. 13.)
-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위촉 강사 초청 특강



□ 인권정책선언 확산을 위한 노력 및 홍보

- 타 공사·공단에 공문 발송을 통한 인권경영정책 선언 전파
- 인권경영 선포식 및 인권경영현장 언론보도를 통한 대외 홍보

나 인권 영향평가 관련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이행

- 평가대상: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개발사업 + 주차사업)
- 평가주관: 경영지원부 경영지원팀 및 지표별 담당 부서(실무협의체)
- 평가기간: 2022. 11 ~ 12월
 -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11. 2.
 - 지표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 11. 14. ~ 11. 15.
 - 지표 확정을 위한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12. 9.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자체평가 : 12. 13. ~ 12. 19.
 - 자체평가 결과(증빙자료) 검토 및 취합 : 12. 15. ~ 12. 20.
 - 최종 심의를 위한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12. 23.
 - 인권경영위원회 최종 평가의견(자문) 수렴 : 12. 26. ~ 12. 30.

나-2

직전년도 인권영향평가 반영사항

□ (2021. 인권영향평가 시) **인권경영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주요사업 평가영역 확대” 반영:** 개발사업 → 개발사업 + 주차사업
- 개발사업 평가 시, 오해 소지인 ‘대장지구’ 대신 ‘부천대장지구’라고 명시

□ (2021. 인권영향평가 시) **도출된 인권리스크 개선결과 반영**

분야	2021년	2022년	주요 개선사항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7.5점	100점 (↑12.5점)	계약체결 시 인권보호준수 서약 작성(이행중) 발주부서에서 모니터링 하도록 제도 개선(추진중)
7.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87.5점	100점 (↑12.5점)	사업 실행 전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마련(완료)

나-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주요 특징 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 상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사 경영활동 및 사업에 맞는 고유지표 설계**
- 2019년 최초 평가 이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사 사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지표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 2022년도 평가는 2021년도 설계 지표를 기반으로 추진

• **기관운영 평가지표: 【10개 분야】 - 【30개 항목】 - 【143개 지표】**

No	분야 (항목수-지표수)	No	분야 (항목수-지표수)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30)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7)
②	고용상의 비차별 (4-16)	⑦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2-10)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14)	⑧	환경권 보장 (4-18)
④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2-12)	⑨	고객 인권보호 (2-8)
⑤	산업안전 보장 (4-18)	⑩	정보인권보호 (2-10)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 상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타 공사 주요사업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고유지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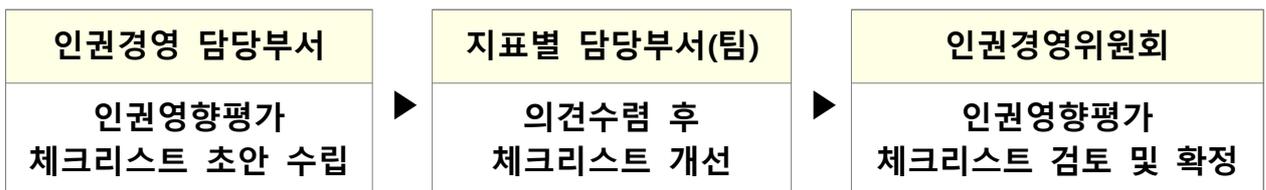
• 주요사업 평가지표: 【개발사업분야】 - 【6개 항목】 - 【24개 지표】

No	평가항목 (지표수)	주요내용
①	공정운영 (5)	• 이용자 권리 침해 방지 및 권리 공개 / 이용자 성희롱, 성폭력 방지 / 불편사항 접수절차 마련 및 조치결과 안내
②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3)	• 이동편의 마련 / 시설안내 / 제도운영
③	안전보장 (4)	• 시설물 안전관리 / 안전점검 / 환경기준 제품 구입 /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수립
④	고객 인권보호 (5)	• 피해사실 안내 및 손실보상 / 정보수집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보안조치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근로자 인권보호 (5)	• 보호용품 제공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 휴게시설 마련 / 감정노동 근로자 지원

• 주요사업 평가지표: 【주차사업분야】 - 【5개 항목】 - 【22개 지표】

No	평가항목 (지표수)	주요내용
①	공정운영 (5)	• 이용자 권리 침해 방지 및 권리 공개 / 이용자 성희롱, 성폭력 방지 / 불편사항 접수절차 마련 및 조치결과 안내
②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3)	• 이동편의 마련 / 시설안내 / 제도운영
③	안전보장 (4)	• 시설물 안전관리 / 안전점검 / 환경기준 제품 구입 /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수립
④	고객 인권보호 (5)	• 피해사실 안내 및 손실보상 / 정보수집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보안조치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근로자 인권보호 (5)	• 보호용품 제공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 휴게시설 마련 / 감정노동 근로자 지원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방법



나-4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완료

- 2022. 11월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2023. 1월 최종 보고 완료

□ 인권영향평가 추진절차

구 분	담당부서(기구)	내 용	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	경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향, 절차 등 세부계획 마련 평가계획, 지표(안) 전부서 공유 	2022. 11. 2.
평가지표 설계	경영지원팀 지표별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별 담당자 확정 및 교육 실시 담당자 회의, 지표 협의 및 개선 	2022. 11. 14. ~ 15.
평가지표 확정	경영지원팀 (검토: 인권경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평가지표 적정성 검토 및 확정 	2022. 12. 9.
자체평가 실시	소관부서 (총괄: 경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별 담당부서 자체평가 실시 평가결과 검증(평가 총괄부서) 	2022. 12. 13. ~ 20.
최종평가 및 심의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신뢰성 검토 등 최종평가 권고의견 제시 최종심의 의결 	2022. 12. 23. ~ 30.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경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타 기관 전파, 홈페이지 등 공개 	2023. 1. 6.

나-5

주요 인권이슈 도출, 중대성 평가 과정

□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 리스크 도출

No	해당지표	도출된 인권 리스크
1	【기관운영평가 분야5】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흡
2	【기관운영평가 분야5】 산업안전 보장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대한 교육 미흡
3	【주차사업평가 항목2】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 보장	외국인의 편의 보장을 위한 안내판 미흡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중)
4	【주차사업평가 항목3】 안전보장	인권·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 구매 실적 수치화 개선 필요
5	【주차사업평가 항목5】 근로자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 내 자체 인권침해 구제절차 도입 필요

□ 주요 인권이슈 도출(중대성 평가)

- 주요 인권이슈: 산업안전보장과 관련한 도출 과제 2건

- (산업안전보장)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흡
 - (산업안전보장)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대한 교육 미흡
- 선정사유: 기관운영평가에서 도출된 과제이면서 **생명·신체와 관련한 심각한 침해로서 다른 과제에 우선하여 해결하고자 선정**
- 선정방법: 인권영향평가 최종 심의기관인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내-6

이해관계자 요청사항 반영 방법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담당자 의견수렴 및 반영

- 실무협의체 개최를 통한 지표 적합성 검토 등 실시: 2022. 11. 14. ~ 15.
- 지적재산권 관련, 연계성이 높은 부서로의 지표 이동 의견 반영
- 주차사업 평가 관련, 평가담당자 총원요청 사항 반영

□ 외부 고객의 인권영향평가 관련 정보 요청사항 반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제공 완료

내-7

식별된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 식별된 주요 인권이슈

- 주요 인권이슈: 산업안전보장과 관련한 과제 2건

- (산업안전보장)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흡
- (산업안전보장)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대한 교육 미흡

□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 안전보건 분야 외부 전문가 위촉 후 작업장 현장점검 실시 및 자문
- 작업장 안전장구와 시설 등 정리정돈 사항 현장점검 실시
- 담당부서 및 이행 기한: 재난안전팀, 2023년 상반기 내 개선

내-8

식별된 주요 인권이슈 실행성과

※ 인권위 지침에 따라 최초로 주요 인권이슈 도출, 차년부터 성과 기재 예정

다 구제절차 관련

다-1

구제절차 방법, 피해 조사방법 등

□ 인권경영규정 내 인권침해 구제절차 방법 등 명시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방법, 처리절차,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 규정

□ 인권침해 신고에 따른 구제절차

① 인권침해 여부 상담

- ▶ 인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

②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 (온라인) 공사 홈페이지 인권경영 카테고리 내 ‘인권침해 신고’ 채널 이용
- ▶ (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서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제출 등)
 - 인권침해 신고서(붙임1) 작성 후 신고
 - 신고내역 확인 및 접수 후 대장(붙임2, 인권경영규정 별지1호)에 기록

③ 인권침해행위 선별 및 처리

- 1) 공사의 현행 구제절차에 부합할 경우 주관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
 - 고충사항,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신고 등
- 2) 공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이관 또는 진정·민원절차 등 안내
- 3) 조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권경영위원회 안전 상정

④ 인권침해사건 조사

- ▶ 위원회의 조사 개시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⑤ 인권경영위원회 결정

- ▶ 침해행위자에 대해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심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인에 결과 안내
- ▶ 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⑥ 시정과 조치

- ▶ 인권침해 사실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

다-2

구제절차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 구제절차 실효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p>담당부서 주요기능 *경영지원부(경영지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정 ▶ 인권침해 신고접수 ▶ 인권침해 조사 대상 선별 ▶ 인권경영위원장에게 신고내용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구제절차 논의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p>구제기구 주요기능 *인권경영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접수사건 조사, 심의 및 의결 ▶ 인권침해 행위 금지 권고,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요구 ▶ 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 신고

다-3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방법

□ 인권침해 구제절차 홍보방법

❖ (내부) 인권침해 유형 및 신고절차 등 정보 공유 강화

- 구제절차가 적용되는 인권침해 유형 및 구제절차 개선계획 안내: 공문발송
- 신고채널 및 신고절차(방문, 전화, 전자우편 등) 안내: 문자 발송, 인트라넷 게시

❖ (외부) 이해관계자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전파

- 이해관계자(협력사, 지역주민, 고객)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방법, 절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관련 정보 팝업 게시 <2022. 4. 25. ~ 5. 8.>
- 계약 체결업체 담당자에 구제절차 등 정보를 담은 메일 발송

□ 홍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 신고채널 개설

-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신고" 게시판 개설: 2022. 4월

♣ 인권침해 신고	♣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 경영지원팀 • ☎ 032-340-0732

다-4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인권경영규정 내 신고인의 신분보장 명시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위원회 위원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암시하거나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5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사항

□ 구제절차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개선계획 수립: 2022. 4월

문서번호	경영지원부-5014	담당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부장	도시개발본부장
보고일자	(2022. 04. 13.)	감리연	윤영선	박세선	김창형
결재일자	(2022. 04. 13.)				
공개여부	공개				
연락처	성명: 김문영 휴: 02-340-0732	협조			
- 구제절차 실효성 강화를 위한 -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선계획					
작위	의견 및 자시사항	주최사항 (담당부서)			
사항					
본부장					
부장					
<p>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근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 공사 인권경영규정 □ 추진목적: 권리구제 처리절차 확립 및 인권보통을 통한 인권존중 경영 실현 □ 구제대상: 내부직원, 고객, 지역주민, 협력업체 직원 등 규정 상 이해관계자 □ 개선사항 <p>구제절차 적용 대상 인권침해 행위 설정, 온라인 신고채널 마련, 홍보방안 수립</p> <p>□ 구제절차</p> <p>① 인권침해 여부 상담 → ② 신고 및 접수 → ③ 인권침해영위 선별 및 처리 → ④ 인권침해사건 조사 → ⑤ 인권경영위원회 결정 → ⑥ 시정조치</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천 도 시 공 사 경영지원부</p>					

【구제절차 개선사항】

- 인권침해와 구제에 대한 개념 정의 반영
-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인권침해 유형별 정의
 - 인권침해 구제절차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범위 설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채널 개설
- 인권침해 신고서 개선
- 인권침해 신고채널, 구제절차 홍보방안 수립

다-6

접수된 건수와 내역, 처리절차와 결과

다-7

미해결 사건에 대한 이유와 향후 대책

※ 2022. 인권침해 접수사항 및 미해결 사건 없음

라 인권경영 교육 관련

라-1

교육을 위한 규정, 전담부서, 담당자 등

□ 인권경영규정 내 인권교육 명시

제16조(인권교육)

-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경영 교육 전담부서: 경영지원부

□ 인권경영 교육 담당자: 경영지원팀 인권경영 업무 담당(김은영)

라-2

교육주제 선정과정 및 활용 경로(방법)

□ 부서(팀)별 인권지킴이 대상 인권교육 추진

- 교육 명: 인권혁신
- 교육대상: 부서(팀) 내 지정된 인권지킴이
* 전 부서100% 참여
- 교육기관: 경기도인재개발원
- 교육방법: 실시간 온라인 재택교육
- 교육내용: 명화와 함께하는 인권감수성, 인권행정 바로알기 등
- 교육주제 선정사유: 인권 전담조직 활동 강화

교육사진



□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추진

- 교육 명: 우리와 함께하는 인권경영 이야기
- 교육대상: 전 직원 <총 87명 참석>
-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초청 집합교육
* 인권위 '기업과 인권' 위촉 강사 초빙
- 교육내용: 인권경영체계의 이해와 효과적 운영방법
- 교육주제 선정사유: 기관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

교육사진



* 인권위 지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은 제외함

라-3

최고경영진 교육여부, 현원대비 참여율

□ 인권경영 교육 시 기관장 참석 및 참여비율



기관장	참석
관리자	총 22명 참석
관리자 참여비율	56%
현원대비 참여비율	24%

라-4

만족도 평가방식 및 평가 결과

□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추진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방법: 네이버 폼 활용, 리커트 척도(5단계 측정) 자기기입식 익명 조사
- 평가결과

1. 교육시간이 적당하였다.			2. 교육주제에 적합한 강의를 되었다.		
	매우그렇다	59.6%		매우그렇다	61.7%
	대체로 그렇다	25.5%		대체로 그렇다	31.9%
	보통이다	10.6%		보통이다	4.3%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매우그렇지 않다	0%		매우그렇지 않다	0%
3. 강의주제에 적합한 전문 강사가 초빙되었다.			4. 강의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었다.		
	매우그렇다	63.8%		매우그렇다	61.7%
	대체로 그렇다	27.7%		대체로 그렇다	29.8%
	보통이다	6.4%		보통이다	6.4%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매우그렇지 않다	0%		매우그렇지 않다	0%
5.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교육이 되었다.			6. 기타 의견		
	매우그렇다	61.7%	경영진이 먼저 공감해야 할 내용 전문성 높은 강사 초빙으로 해당 업무 이해에 도움 차분하게 전달되고, 진정성 있는 교육이 됨 풍성한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사례 소개 이해하기 쉽게 진행된 교육이었음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		
	대체로 그렇다	27.7%			
	보통이다	6.4%			
	대체로 그렇지 않다	2.1%			
	매우그렇지 않다	0%			

마 종합적 평가, 공개의 원칙 및 소통

마-1

인권경영 전체과정(성과) 종합적 평가

□ 2022. 인권경영 주요 성과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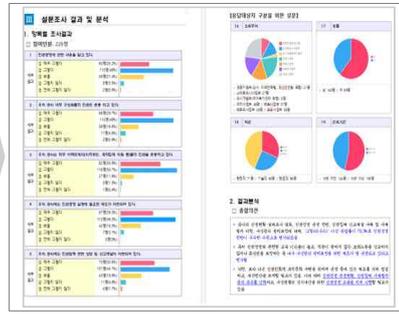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준용,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최종 보고 완료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수용,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
- 보고지침 반영,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포함하여 인권경영헌장 개정

- 인권영향평가 시 주요사업 분야 확대(개발사업 → 개발사업 + 주차사업)

-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경쟁 과제 발굴

발굴과제 총 7건	과제1. 추진 사업 또는 서비스의 공정한 접근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과제2. 공정경쟁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과제3. 교육기회 균등부여를 통한 인재육성 추진
	과제4. 공정계약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과제5. 공평하고 공정한 주차 공간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순환제 확대
	과제6. 부천체육관 및 부속시설의 회원관리프로그램(사전예약시스템) 통합
	과제7. 투명하고 공정한 원클릭·비대면 서비스 확대

-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 점검을 위한 조사 실시 및 도출과제 이행

인권현황 실태조사	과제도출						
<p>【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 점검, 인권침해 평가 등 ■ 인권경영 과제도출 <p>【조사결과】_229명 참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인권경영 전반</th> <th>구제절차</th> <th>권리보장</th> </tr> <tr> <td>'매우우수', '우수' 79.3%</td> <td>'매우우수', '우수' 76.2%</td> <td>'매우우수', '우수' 80.1%</td> </tr> </table>	인권경영 전반	구제절차	권리보장	'매우우수', '우수' 79.3%	'매우우수', '우수' 76.2%	'매우우수', '우수' 80.1%	 <p>1 제도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p> <p>2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p> <p>3 인권경영 개선 소통창구 마련</p> <p style="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증장기 추진전략 반영</p>
인권경영 전반	구제절차	권리보장					
'매우우수', '우수' 79.3%	'매우우수', '우수' 76.2%	'매우우수', '우수' 80.1%					

- 인권경영 정보의 대외 공표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 「인권경영정보」 게시판 개설 및 인권경영 성과 게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구제절차 적용 대상 범위 설정, 온라인 신고채널 개설, 홍보 강화

- 지역사회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확대

<p>① 임원 & 인권자킴이 캠페인 참여</p>	<p>② 캠페인 포스터 홈페이지 게시</p>	<p>【보도자료】</p>
		
<p>③ 사업장 내 포스터 송출</p>	<p>④ 복지택시 차량 내 포스터 부착</p>	
		
<p>⑤ 사업장별 운영 중인 시설 및 전광판을 통해 인권존중 문구 송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부천도시공사는 나와 동료, 고객의 인권을 존중합니다."</p>		
<p>버스정보안내기(BIS)</p>	<p>전광판</p>	
		

2022년도의 경우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모두 완료하였음. 특히 인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전년도 도출한 인권의리스크를 모두 개선하였음. 더불어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기관과 지역사회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한 캠페인 등을 주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마-2

미진한 점, 차년도로 넘겨진 인권이슈

- 2022. 인권경영 추진 중 미진한 점: 『실천협약』 활동 부진
 -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과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타 공사·공단(시흥, 인천연구수) 체결한 업무협약 활동 미흡
- 차년도로 넘겨진 인권이슈: 없음 * 전년도 도출된 인권이슈 개선 완료

마-3

외부 이해관계자에 공개된 구체적 방법

-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게시판을 개설하여 정보 공개

구분	게시주소(URL)	공개 정보
인권경영현장	https://www.best.or.kr/fmcs/345	인권경영현장 전문
인권경영규정	https://www.best.or.kr/fmcs/346	공사 인권경영규정(개정사항 포함)
인권경영정보	https://www.best.or.kr/fmcs/347	인권영향평가보고서, 인권존중 캠페인 추진결과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https://www.best.or.kr/fmcs/796	인권침해 유형, 신고처 등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등록
 - 인권경영 성과 등을 사전정보로 등록, 정보공개포털에 표출 중(대국민 공개)
- 공문발송을 통한 인권경영 실천 사항 전파
 - 인권영향평가 최종 보고, 인권경영현장 개정사항 등 타 공사·공단 전파
- 타 기관 벤치마킹 협조를 통한 인권경영 우수사례 전파
 - 안산도시공사(2022. 8. 23.) / 계양구시설관리공단(2022. 11. 21.)

마-4

제3자 검증여부, 검증기관과 결과

- 인권경영 추진성과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및 검증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된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시 성과 보고
 - 2022.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12. 9.), 인권경영 추진실적 보고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 최종 검증 및 심의
 - 검증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내·외부 위원 교차 평가 실시

마-5

제한적으로 공개된 경우, 그 사유

※ 인권경영 보고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공개된 경우 없음

마-6

경영평가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됨

- 종합평가결과: 가중치 5점 중 4.4점(평점 88점) / 2등급
- 종합의견
 - 공사 경영활동 및 사업에 맞는 고유지표를 설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점이 우수함.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중에서 4개 분야 항목을 도입하여 공정거래제도 개선 체계를 구축한 점도 적절하였음
 - 직장 내 각종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직장 내 통제장치의 강화와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조력이 요구됨

5

행정사항 (후속조치)

- 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 따라, 결재 완료 후 **최종보고서 대외 적극 공개**
- 지침에 따라 보고서에 답아야 하는 내용 중 일부 중복되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하였으며, 향후 관련 사항 발생 시 보고서 내 포함
- 인권위원회 지침 중 “평가” 부분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긍정적 평가결과 도출을 위하여 **인권경영 평가 지침 사항을 반영하여 인권경영 추진체계 개선 및 실행**

끝.